

#### [서식 예]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(당사자 간 직계혈족)

# 소 장

원 고 O O O (OOO)

1900년 0월 0일생

등록기준지 OO시 OO구 OO길 OO

주소 O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)
전화 OOO - OOOO

피 고 △ △ △ (△△△)

19○○년 ○월 ○일생

등록기준지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주소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)

전화 ○○○ - ○○○○

#### 혼인무효확인청구의 소

# 청 구 취 지

- 1.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〇〇. 〇. 〇. 〇〇시 〇〇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 청 구 원 인



- 1. 피고 △△△은 원고의 이종사촌이었으나 원고의 어머니와 피고의 어머니가 1951년 8월경 피란 도중 헤어지게 되어 이를 알지 못하고 피고와 원고는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입학하여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사귀던 중 결혼을 하고 19 ○○년 ○월 ○일 ○○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.
- 2. 이후 원고 어머니와 피고 어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하던 도중 서로가 6·25때 헤어진 자매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원고는 혼인무효확인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.

## 입 증 방 법

1. 혼인관계증명서	1통
1. 제적등본	1통
(또는,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)	1통
1. 결혼식 사진	1통
1. 증언서	1통

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각 1통1. 소장부본1통1. 납부서1통

2000년 0월 0일

원 고 ㅇ ㅇ ㅇ (인)

#### ㅇㅇ가정법원 귀중



제출법원	※ 아래참조	관련법규	가사소송법 제22, 23, 24조	
제기권자	(가사소송법 제23조) · 당사자 · 법정대리인 · 4촌 이내의 친족			
상 대 방	<ul> <li>(가사소송법 제24조)</li> <li>・부부의 일방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함</li> <li>・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, 부부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함</li> <li>・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함</li> </ul>			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	
불복절차 및 기간	· 항소(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) ·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(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)			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	
혼인무효 사 유	(민법 제815조) 1.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. 당사자간에 8촌 이내의 혈족(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) 3.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.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			

#### ※ 제 출 법 원(가사소송법 제22조)

- 1.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
- 2.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
-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,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
- 4.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
- 5.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